

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8일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년 12월 13일(제7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77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명 재)

가. 제안이유

-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「수돗물 평가위원회」로 바뀌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설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명칭을 「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「수돗물평가위원회」로 변경(안 제1조)
-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, 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를 확대(안

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의 명칭에 “수질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,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수질 이외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
- 수질향상은 물론, 수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-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